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88호 2025. 1. 9.(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규 칙

-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49호)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50호)
-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51호)

고 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2025-7호)

공 고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4호)
-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5-91)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49호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18조)
 - 임의변제청구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삭제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0호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월일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위탁관리·운영 (연장)신청기간					
법인(단체) 운 영 사업장(시설) 현 황	사업장(시설등)명	시설장 성명	허가번호	소 재 지	설치연도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관리·운영(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2. 운영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위탁관리·운영(연장) 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삭제(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51호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환경관리과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담당자”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현행화 (안 제2조)

- 기업출납원 : 환경관리과장 → 맑은물사업소장
- 수입원 : 수입업무 담당자 → 수입업무 팀장
-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자 → 지출업무 팀장
-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자 → 자산업무 팀장
-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자 → 자산업무 팀장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안 제51조)

- 채권자 영수인 날인 시 청구자와 영수자가 다른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변경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지보	도장	산30-12	1,721	2024.12.31. ~ 2026.12.31.	80,000	이 *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247번지 일원 ‘예천 서본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수

1. 공람기간 : 2025. 1. 9. ~ 2025. 1. 23. (14일간)
2. 공람장소 : 예천군청 도시과
3. 공람내용 :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4. 관련도면 및 조서 : 붙임참고

※ 붙임 결정도(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견제출 :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 및 산림녹지과(☎054-650-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천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

구분	도면표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서본공원	근린공원	예천읍 서본리	64,974	감)15,185	49,789	건고 제713호 (1967.12.26.)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서본공원	- 구역 경계 변경 - 면적 : 64,974 → 49,789㎡ (감: 15,185㎡)	생활권공원(근린공원)으로써 여가·휴식·문화 기능의 공간을 제공하고,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공원 구역계 정형화 및 조성계획 변경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가. 총괄표

시설 구분	기정					변경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건축물 (㎡)		구성비 (%)
			건축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	
합계	72,786	25,998	3,513.02	7,337.18	100.0	49,789 (감22,997)	9,248 (감16,750)	11.22 (감3,501.8)	11.22 (감7,325.96)	100.0
기반 시설	9,973	9,973	-	-	13.7	4,914 (감5,059)	4,914 (감5,059)	-	-	9.9
조경 시설	202	202	-	-	0.3	228 (증26)	228 (증26)	-	-	0.5
휴양 시설	3,077	3,077	675.32	1,716.89	4.2	670 (감2,407)	670 (감2,407)	(감675.32)	(감1,716.89)	1.3
유희 시설	1,200	1,200	-	-	1.6	185 (감1,015)	185 (감1,015)	-	0	0.4
운동 시설	663	663	-	-	0.9	86 (감577)	86 (감577)	-	-	0.2
교양 시설	7,618	7,618	2,738.5	5,517.09	10.5	1,650 (감5,968)	1,650 (감5,968)	(감2,738.5)	(감5,517.09)	3.3
편익 시설	3,265	3,265	992	103.2	4.5	1,515 (감1,750)	1,515 (감1,750)	11.22 (감980.78)	11.22 (감980.78)	3.0
녹지· 기타	46,788	-	-	-	64.3	40,541 (감6,247)	-	-	-	81.4
공원 시설률	◦ 25,810 ÷ 72,786 × 100 = 35.5%(법정 40%이하)					◦ 9,248 ÷ 49,789 × 100 = 18.6%(법정 40%이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별표4〉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에 따른 근린공원 공원시설률 40%이하 준수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시설구분	시설명	부호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부지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합 계			72,786	-	3,513.02	7,337.18		49,789	-	11.22	11.22		
기 반 시 설	소 계		9,973	-	-	-		4,914	-	-	-		
	도 로	1-1	7,001	-	-	-		4,446	-	-	-		변경
	광 장		2,972	-	-	-		468	-	-	-		변경
	광장1	1-2	1,382	-	-	-		468	-	-	-		변경
	광장2	1-3	1,572	-	-	-		-	-	-	-		폐지
조 경 시 설	소 계		202	-	-	-		228	-	-	-		
	파고라1	2-1	202	-	-	-		-	-	-	-		폐지
	잔디마당	2-1	-	-	-	-		228	-	-	-		신설
	플랜터의자	①	-	-	-	-		-	-	-	-	6개소	신설
휴 양 시 설	소계		3,077	-	675.32	1,716.89		670	-	-	-		
	노인복지회관		2,703	-	631.32	1,672.89		-	-	-	-		폐지
	1	3-1		1 (지상2)	381.82	1,113.02		-	-	-	-		폐지
	2	3-2		1 (지상2)	249.50	559.87		-	-	-	-		폐지
	노인정	3-3	278	1 (지상1)	24	24		-	-	-	-		폐지
	휴게소	3-4	96	1 (지상1)	20	20		-	-	-	-		폐지
	휴게쉼터-1	3-1	-	-	-	-		423	-	-	-		신설
	휴게쉼터-2	3-2	-	-	-	-		86	-	-	-		신설
	휴게쉼터-3	3-3	-	-	-	-		79	-	-	-		신설
	휴게쉼터-4	3-4	-	-	-	-		82	-	-	-		신설
	등의자	②	-	-	-	-		-	-	-	-	10개소	신설
	앉음벽	③	-	-	-	-		-	-	-	-	27m	신설
	파고라의자셋트	④	-	-	-	-		-	-	-	-	4개소	신설
유 희 시 설	소 계		1,200	-	-	-		185	-	-	-		
	어린이놀이터	4-1	1,200	-	-	-		-	-	-	-		폐지
	그네		-	-	-	-		-	-	-	-		폐지
	미끄럼틀		-	-	-	-		-	-	-	-		폐지
	사장		-	-	-	-		-	-	-	-		폐지
	시소		-	-	-	-		-	-	-	-		폐지
	정글짐		-	-	-	-		-	-	-	-		폐지
	기타		-	-	-	-		-	-	-	-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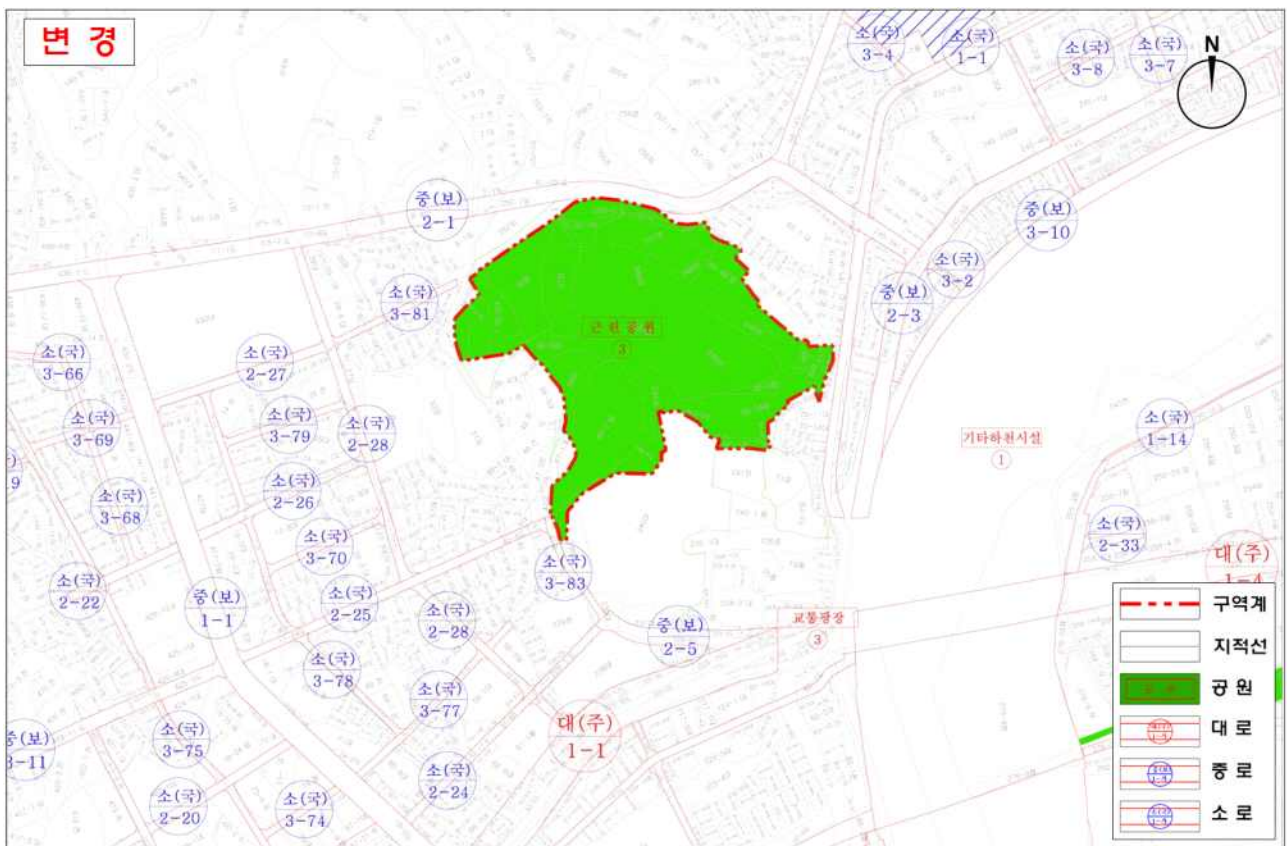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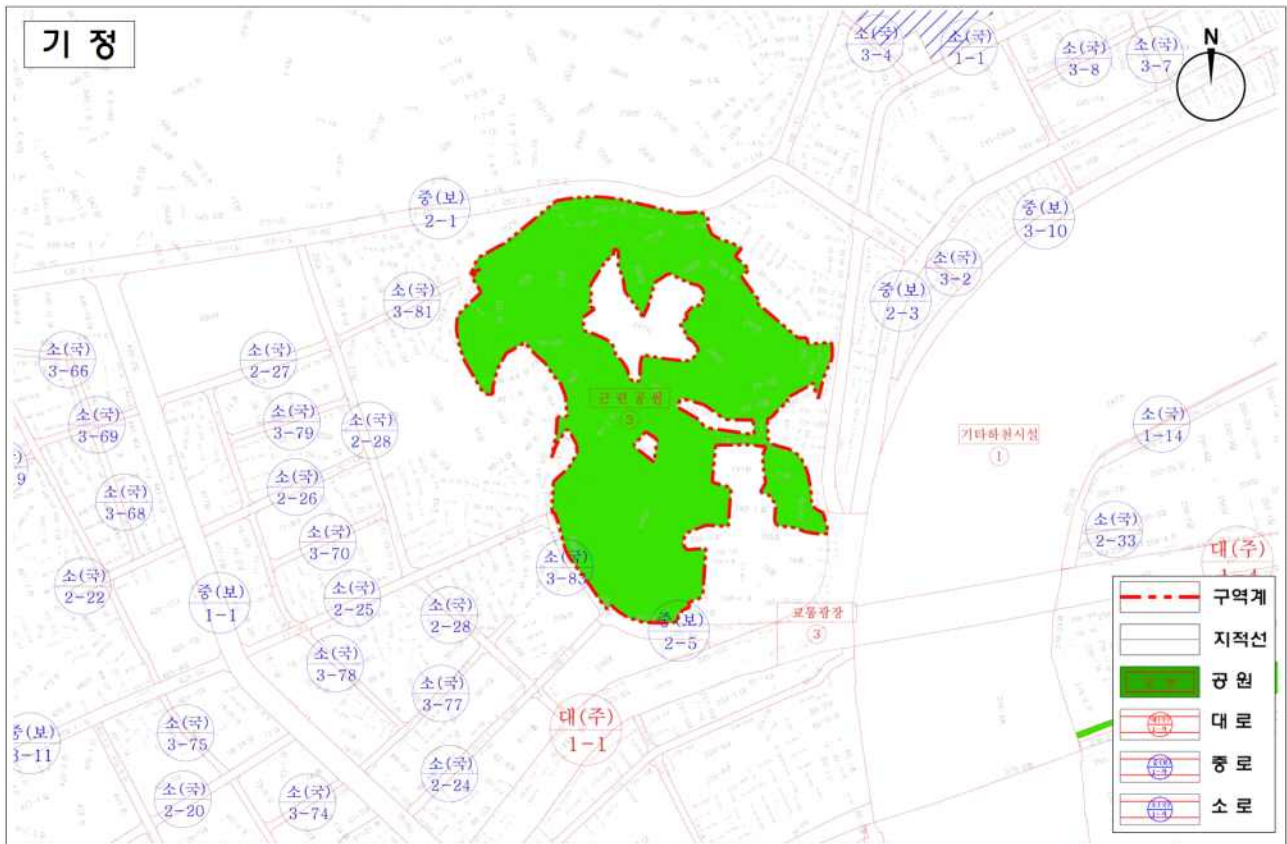
시설구분	시설명	부호	기정					변경					비고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부지면적 (㎡)	건축물 (㎡)			공작물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동수 (층)	건축 면적	연면적		
유흥시설	숲놀이터	4-1	-	-	-	-		185	-	-	-		신설
	통나무건너기	⑤	-	-	-	-		-	-	-	-	1개소	신설
	숲속그네	⑥	-	-	-	-		-	-	-	-	1개소	신설
	네트망오르기	⑦	-	-	-	-		-	-	-	-	1개소	신설
	숲움막	⑧	-	-	-	-		-	-	-	-	1개소	신설
운동시설	소 계		663	-	-	-		86	-	-	-		폐지
	정구장		-	-	-	-		-	-	-	-		폐지
	배구장		-	-	-	-		-	-	-	-		폐지
	게이트볼장	5-1	663	-	-	-		-	-	-	-		폐지
	체력단련시설	5-1	-	-	-	-		86	-	-	-		신설
	체력단련시설-1	⑨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2	⑩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3	⑪	-	-	-	-		-	-	-	-	1개소	신설
	체력단련시설-4	⑫	-	-	-	-		-	-	-	-	1개소	신설
교양시설	소 계	⑬	7,618		2,738.5	5,517.09		2,189	-	-	-		
	문화회관	6-1	5,472	1 (지상3)	2,443.5	4,411.09		-	-	-	-		폐지
	학생도서관	6-2	2,146	1 (지상4)	295	1106		-	-	-	-		폐지
	충혼광장	6-1	-	-	-	-		1,650	-	-	-		신설
편의시설	소 계		3,265	-	99.2	103.2		1,515	-	-	-		
	주차장	7-1	2,537	-	-	-		1,445	-	-	-		변경
	공중화장실1	7-2	117	1 (지상1)	24	24		70	1 (지상1)	11.22	11.22		변경
	공중화장실2	7-3	146	1 (지상1)	24	24		-	-	-	-		폐지
	공중화장실3	7-4	29	1 (지상1)	7.2	7.2		-	-	-	-		폐지
	전망대	7-5	418	1 (지상2)	28	28		-	-	-	-		폐지
	시계탑	7-6	18	-	-	-		-	-	-	-		폐지
녹지	-		46,788					40,541					변경

다. 도로 결정(변경)(안)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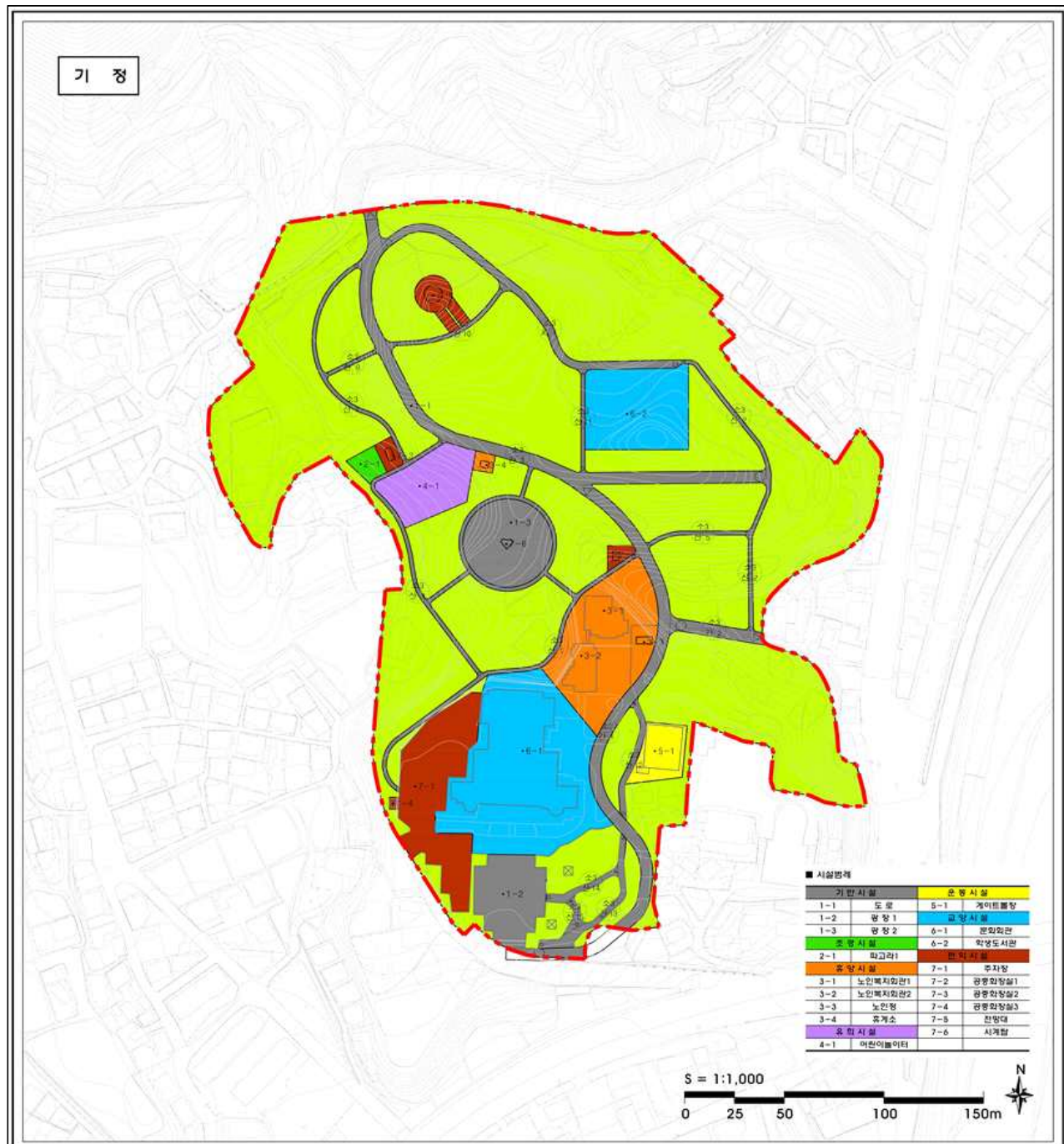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기능	시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합계	기정				2,000.5	7,001.0				
	변경				1,105	4,446				
폐지	소로	3	1	6	262	1,733	간선도로	부지경계	소3-간3	
폐지	소로	3	2	6	40	240	간선도로	소3-간1	부지경계	
폐지	소로	3	3	6	260	1560	간선도로	소3-산2	부지경계	
폐지	소로	3	1	4	180	720	지선도로	소3-간3	소3-산2	
폐지	소로	3	1	2	404	808	산책로	주차장	소3-간1	
폐지	소로	3	2	2	140	280	산책로	소3-간2	소3-지1	
폐지	소로	3	4	2	159	318	산책로	소3-산1	소3-간3	
폐지	소로	3	5	2	40	80	산책로	소4-간1	소3-산2	
폐지	소로	3	7	2	133.5	267	산책로	소3-간3	소3-산4	
폐지	소로	3	9	2	31	62	산책로	소3-간3	소3-산7	
폐지	소로	3	10	2	70	140	산책로	소3-간3	소3-지1	
폐지	소로	3	11	2	50	100	산책로	소3-간3	소3-지1	
폐지	소로	3	12	3	63	190	산책로	소3-간1	소3-간1	
폐지	소로	3	13	3	98	293	산책로	소3-간1	소3-간1	
폐지	소로	3	14	3	45	134	산책로	광장1	소3-산13	
폐지	소로	3	15	3	25	76	산책로	소3-산13	소3-산14	
신설	소로	1	1	11.0	234	2,114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신설	소로	1	2	10.0	18	199	진입로	소1-1	주차장	
신설	소로	3	1	3.5~8.0	55	315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2	2.5	424	1,059	산책로	충혼광장	충혼광장	
신설	소로	3	3	2.5	4	11	산책로	소3-2	소3-1	
신설	소로	3	4	2.5	86	218	산책로	소1-1	소3-2	
신설	소로	3	5	2.0	80	162	진입로	휴게쉼터3	소3-2	
신설	소로	3	6	2.0	71	143	진입로	소3-2	부지경계	
신설	소로	3	7	1.5~2.5	114	194	진입로	소3-2	소3-1	
신설	소로	3	8	1.2~2.0	19	31	진입로	소3-2	부지경계	

※ 위 도로는 군계획시설이 아닌 공원 내 도로용지 구분 표시임.

[참고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참고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도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본공원]

조 성 계 획 총 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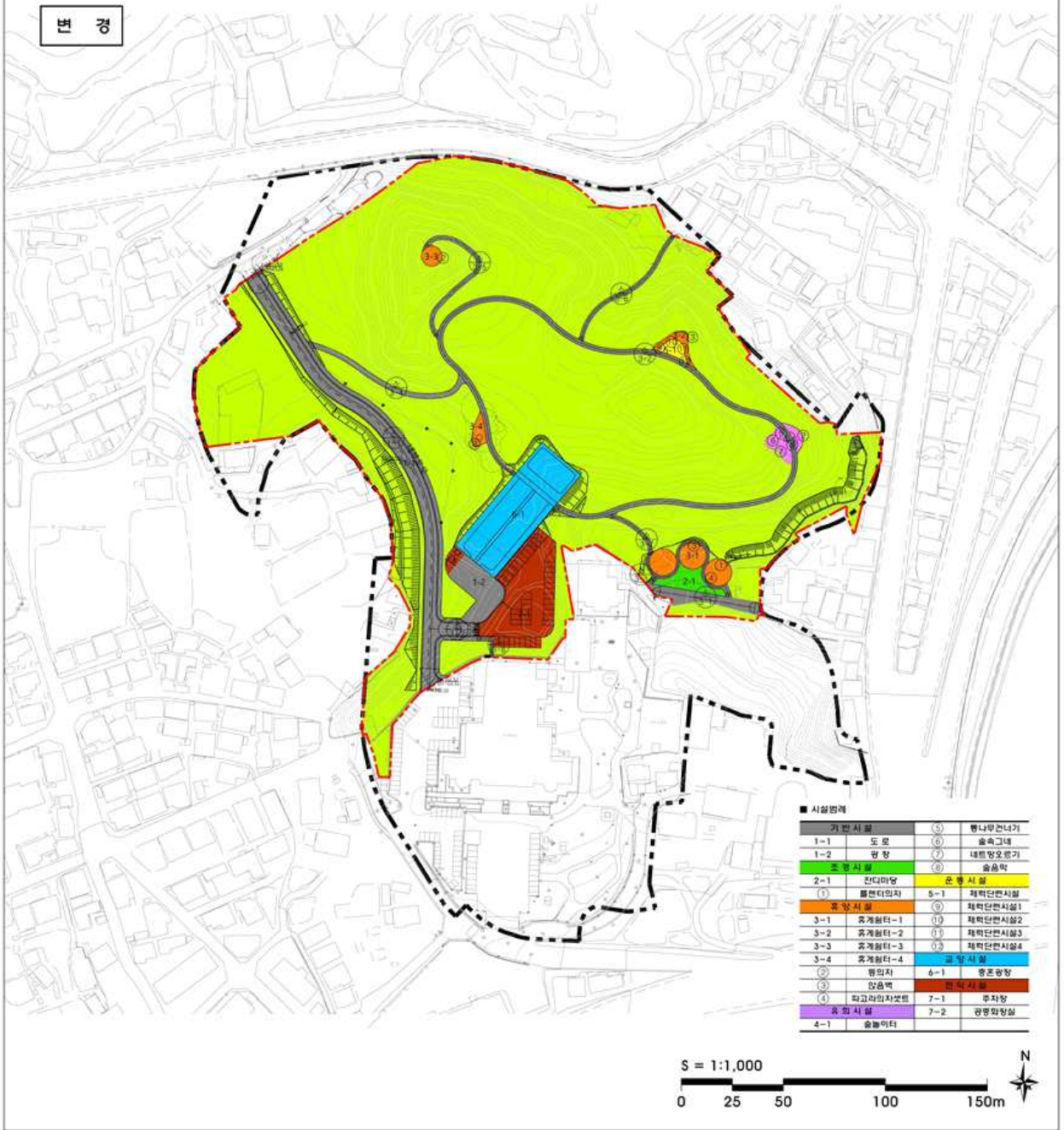
범

례

시 설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개 정		구성비(%)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72,786	25,998	3,513.02 (234.98)	7,317.18 (255.18)	100.0	
기 관 시설	9,973	9,973	-	-	13.7	
조 양 시설	202	202	-	-	0.3	
휴 쉼 시설	3,077	3,077	675.32 (2136.32)	1,716.89 (2231.89)	4.2	
유 휴 시설	1,200	1,200	-	-	1.6	
운 행 시설	663	663	-	-	0.9	
교 양 시설	7,618	7,618	2,738.5 (2178.50)	5,517.09 (2183.91)	10.5	
편 의 시설	3,265	3,265	992 (27.2)	103.2 (27.2)	4.5	
녹지 및 기타	46,788	-	-	-	64.3	

※ 시설률 : 25,998 / 72,786 X 100 = 35.7%(법정 40%이내)

변경



■ 시설명세

기반시설	(5)	봉납부연대기
1-1 도로	(6)	소속근대
1-2 광장	(7)	내원양호분기
조경시설	(8)	소속락
2-1 전대미양	(9)	운행시설
(1) 물처리장치	5-1	제약단편시설
휴양시설	(9)	제약단편시설1
3-1 휴게실터-1	(10)	제약단편시설2
3-2 휴게실터-2	(11)	제약단편시설3
3-3 휴게실터-3	(12)	제약단편시설4
3-4 휴게실터-4	(13)	교양시설
(2) 탐방지	6-1	종교광장
(3) 탐승역	(14)	전차시설
(4) 파고라와자켓	7-1	주차장
휴식시설	7-2	광명화장실
4-1	소속아터	



예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서본공원]

조성계획총괄도

면

례

시설구분	거항				구성비(%)	면적				구성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72,786	25,998	3,513.02	7,317.18	100.0	49,789 ([22,997])	9,248 ([1,750])	11.22 ([5,501.80])	11.22 ([7,325.96])	100.0	
기반시설	9,973	9,973	-	-	13.7	4,914 ([25,059])	4,914 ([25,059])	-	-	9.9	
조경시설	202	202	-	-	0.3	228 ([26])	228 ([26])	-	-	0.5	
휴양시설	3,077	3,077	675.32	1,716.89	4.2	670 ([22,407])	670 ([22,489])	675.32 ([27,533])	1,716.89	1.3	
유원시설	1,200	1,200	-	-	1.6	185 ([1,015])	185 ([1,015])	-	-	0.4	
운동시설	663	663	-	-	0.9	86 ([25,777])	86 ([25,777])	-	-	0.2	
교양시설	7,618	7,618	2,738.5	5,517.09	10.8	1,650 ([25,968])	1,650 ([25,968])	2,738.5 ([2,738.5])	5,517.09	3.3	
전차시설	3,265	3,265	992	103.2	4.5	1,515 ([1,750])	1,515 ([1,750])	11.22 ([2,980.78])	11.22 ([2,980.78])	3.0	
주차 및 기타	46,788	-	-	-	64.3	40,541 ([26,247])	-	-	-	81.4	

* 시설률 : 9,248÷49,789×100 = 18.6% (법정 40%이하)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9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 6. 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학생 및 교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 등
-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추진 등

다.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 자격 :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구성 :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
- 요건 :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 시설과 장비 확보
- 환경교육 업무 위탁 : 국·공립 교육시설, 지역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4.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oyjk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3) 팩스 : 054-650-6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전화: 054-650-6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예천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교육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별표 1에 따른다.

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
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교육시설

2. 지역 환경교육센터

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